**‘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 동아리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동아리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은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Abandonness Orchestra)라 한다.

**제2조 [목적]**

1.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는 모든 숭실인의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존중하며 더불어 단합과 조화, 진리와 봉사를 최종 목표로 한다.

2.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은 ‘아반도네(‘자유롭게’를 뜻하는 악상기호)’의 이름에 맞게 자유로운 오케스트라 활동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모든 행동과 언행에 책임을 진다.

**제3조 [동아리 해산]**

1. 동아리의 해산은 회장의 최초 제의 또는 임원 4인 이상의 결의로 발생한다.

2. 절차

가. 동아리 해산은 정당한 절차로 개최된 총회를 통해 결정하며, 총회

개최, 안건, 의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회칙 제9조(총회)를 따른다.

나. 동아리 관련 모든 자료는 삭제하고 동아리 SNS는 폐쇄한다.

다. 동아리 연합회에 보고한다.

**제2장 회칙**

**제4조 [회칙의 정의]**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회칙(이하 본 회칙)은 숭실대학교 관현악 동아리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말한다.

**제5조 [회칙의 개정]**

1. 회칙의 개정, 신설, 폐지는 회원 3인 이상이 동의 또는 임원진에 의해 제안된다.

2. 회칙의 개정, 신설, 폐지는 회칙 개정 위원회를 개설하여 실시한다.

가. 회칙 개정 위원회는 OB 임원진과 현 임원진,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로

구성된다.

나. 회칙 개정 위원회는 회칙을 개정한 후, 개정된 회칙을 공개하고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회원의 동의를 구한다

다. 회칙 개정 위원회는 필요시 2차 이상 개설할 수 있다.

**제6조 [회칙의 발효]**

회칙은 공표 즉시 그 효력을 발한다.

**제3장 활동**

**제7조 [활동의 종류]**

1. 총회

2. 홈커밍데이

3. 정기 연주회를 위한 합숙 훈련(음악캠프)

4. 정기연주회

5. 이 외의 활동은 임원진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제8조 [아반도네즈 3대 행사]**

1. 연주회

가. 연주회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한다. (단, 자연재해, 전염성 질병 유행 등

으로 인해 연주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나. 시기와 장소는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다.

다. 연주회에서 연주할 곡 선정에 있어서, 동일한 곡은 3년의 간격을 두고

가능하다. 단, 3년 이내 연주된 곡이라도 편곡이 다른 경우는 연주 가능하나

지휘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합주의 경우 중주, 독주와 별개로 한다)

라. 회원은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참여한다.

마. 연주회 기획의 권한은 회장이 가지나, 임원진과의 충분한 논의가 동반

되어야 한다.

바. 연주자의 복장은 격식을 갖춘 검은색 정장을 기본으로 한다

단, 연주자와 편의와 곡의 컨셉을 존중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 연주회의 스텝은 연주회의 조명, 음향, 무대, 촬영, 안내를 담당한다.

2. 합숙훈련 (음악캠프)

가. 음악캠프는 정기연주회에 참가하는 연주자의 실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음악캠프의 시기와 장소는 임원진에 의해 결정된다.

다. 음악캠프는 필요에 의해 연 1회 이상 실시가 가능하다.

라. 연주자는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참여한다.

3. 홈커밍데이

가. 홈커밍데이는 이미 졸업하신 아반도네즈의 모든 선배님들께 신입생들의

인사가 이루어 지며 선후배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이다.

나. 홈커밍데이의 시기와 장소는 회장에 의해 결정된다.

**제9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가. 정기 총회는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를 말하며, 날짜는 임원진이 정한다.

나. 임시 총회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개회할 수 있다.

① 회장의 발의 및 임원진 과반수의 동의 ② 임원진 과반수의 발의 ③ 정회원 과반수의 발의

2. 일반안건

가. 활동 보고.

나. 활동 계획 수립.

다. 예산 집행과정, 결과 보고.

라. 그 외 회장, 임원, 혹은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모든 안건

3. 특별안건

가. 임원진 선출

나. 임원진 해임

다. 임원진 불신임 결의

라. 회원의 자격상실 여부 결정

마. 동아리의 해산

바. 그 외 회장, 임원, 혹은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모든 안건

4. 정족수

본 회칙에서 재적회원이란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동아리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재학생을 말한다. 이 때, 회원의 자격은 제12조를 따른다.

가. 일반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특별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정족수가 소수가 나올 경우 보수적으로 결정한다.

**제10조 [활동의 불참]**

다음과 같은 경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시험, 수업 등 학업 일정

2. 군 입대, 예비군 훈련 등 병무 일정

3. 구직활동

4. 회원과 그 가족, 친척의 경조사

5. 회원과 그 가족, 친척의 병가

6. 기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7. 위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불참 시에는 회원에 대한 권한을

추구할 수 없다. 회원에 대한 권한은 제13조를 따른다.

**제4장 회원**

**제12조 [회원의 자격]**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숭실대학교, 대학원 및 부설 교육기관(글로벌 미래 교육원)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가입 후의 학교 변동은 인정한다.

2. 회비 납부

3. 재학 중 군입대, 휴학, 가입 후 학교 변동의 경우 회원의 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제13조 [회원의 권리]**

본 동아리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발언권

2. 회계내역 감사권

3. 임원 회의록 공개 요구권

4. 선거권

5. 피선거권

6. 피임명권

7. 총회 개회 요구권

8. 총회 안건 제출권

9. 총회 안건 의결권

10. 불신임안 제출권

**제14조 [회원의 의무]**

본 동아리의 회원은 아래에 나열된 의무를 진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활동 참가의 의무

**제15조 [기수]**

기수는 학번과 나이에 상관없이 2008년을 1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1씩 증가한다.

**제16조 [회원 자격 상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 의결 후 본 동아리에서 제명한다.

1. 제12조에서 요구된 자격을 상실한 자.

2. 회원 간의 예를 저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해를 가한 자.

3.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동아리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회비를 2학기 이상 미납한 자.

5. 제10조에 규정된 내용 외의 사유로 3회 연속 동아리 활동을 불참한 자.

6. 본 동아리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제17조 [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1. 본 동아리를 탈퇴하는 즉시 회원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가 소멸하며, 탈퇴 이전 납입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재가입은 가능하나 기수는 소급되지 않는다.

3. 재가입 가능의 여부는 임원진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5장 임원진**

**제18조 [임원진 및 지휘자]**

1.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악장, 회계, 악보계, 홍보계, 서기로 구성되며 각각 1인으로 구성된다.
2. 임원진의 논의하에 겸임이 가능하다.
3. 임원진 논의하에 임원진을 구성하는 직책은 신설, 조정이 가능하다.
4. 임원진은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행사에

참여한다.

1.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진은 회장에 의해 선출 및 임명되며, 필요시 회장은 자신이

임명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4. 임기는 지난해 2학기 정기연주회부터 당해 2학기 정기연주회까지로 한다.

5. 제명된 임원의 권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회수된다.

가. 회장

나. 부회장

다. 총무

라. 악장

마. 회계

바. 악보계

사. 홍보계

아. 서기

6. 지휘자는 임원진에서 제외되지만,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9조 [회장]**

1. 회장은 본 동아리의 대표자가 되며, 모든 일을 총괄한다.

2. 회장의 권한과 임무

가. 동아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 결정, 거부권

나. 해당파트의 업무 내용을 보고받을 권한

다. 행사의 허가권을 가지며 허가 없이 발생한 활동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장

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지휘자 및 임원 임명권, 해임권

마. 임원의 신설, 조정권

바. 차기 회장 임명권

**제20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유고나 사망, 탄핵, 사임, 일시적 포기 등의 이유로

회장으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또한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부회장의 임무

가. 연명부 관리

나. OB연락 및 주소록 관리

다.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제21조 [총무, 회계, 악보계, 홍보계, 서기]**

1.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회장은 총무에게 자신의 권한을 단기 위임할 수 있다.
2. 회계는 본 동아리의 재정을 담당한다.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6장(재정)을 따른다.
3. 악보계는 본 동아리의 모든 악보를 관리하며, 악장과 회장이 요구하는 악보를 언제든지 구비해야 한다.
4. 홍보계는 본 동아리의 홍보를 담당한다.
5. 서기는 임원 회의록 작성, 동아리 활동에 대한 출결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제22조 [지휘자]**

1. 지휘자는 정기연주회와 정기연습의 지휘를 책임진다.

2. 지휘자의 임무

가. 연주회 연습지도

나. 연주회 프로그램 목록 관리

다. 악장 및 파트장의 임명 및 해임 제안권

라. 연주회 중주 팀 관리

3. 지휘자는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이 선임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

**제23조 [악장]**

1. 악장은 각 파트장을 임명한다.

2. 악장의 임무

가. 연주회 연습주도

나. 정기연습 계획 구성

다. 연습 및 연주회 자리 배치 및 구성 제안

**제24조 [파트장]**

1. 파트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파트를 이끌 권한이 있다,
2. 자신의 파트의 연습을 주도한다.

**제25조 [임원진의 선출]**

1. 임원진은 본 장에 나열된 임원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여야 한다.

2.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는 중임은 가능하나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4. 정기연주회를 해본 모든 학년이 가능하다.

5. 숭실대학교 학부 및 외부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6. 회장 이외의 임원이 공석이 되어 재선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진 논의하에

재선출할 수 있다.

가. 공석이 아닌 경우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나. 임원의 재선출은 해당 기수 임원진 논의하에 결정되거나 총회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7. 악장의 경우 ‘연임’을 예외적으로 허한다.

8.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연주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차기 회장이 선출한다. 연주회 종료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회장은 차기 회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기간을 가질 의무를 갖는다.

**제6장 재정**

**제26조 [재정의 관리]**

1. 동아리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와 회비의 관리는 회계가 담당한다.

2. 회비의 관리 방식은 회장의 방침에 따른다.

3. 회비는 회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용한다.

4. 회계는 회비 결산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5. 회계는 회비 사용 내역 및 재정 현황을 정리하여 매 달 해당 학기 재적 회원에게 공람한다.

6. 회계연도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27조 [예산의 책정]**

임원진은 회계연도 전에 그 해의 예산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비를 책정한다.

**제28조 [상비금]**

1. 회계는 50만원을 상비금으로 보유하여야한다.

2. 상비금은 한 해 예산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3. 상비금은 동아리 재정의 안전성을 위해 보유하는 금액이며, 3대행사의 예산이 부족할시에만 보수적으로 사용한다.

**제29조 [회비의 납부]**

1. 한 학기 회비는 해당학기 회비 납부 시작과 동시에 공표한다.

2. 회비는 공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회계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가.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 회계와 회장은 미납자의 실명을 거론하여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분납이 가능하다.

3. 회비를 회계에게 직접 납부하지 않고, 타인을 통하여 납부하여 문제가 생길 시에

회계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각종 활동 시 추가로 회비를 걷을 수 있다.

**제7장 동아리방**

**제30조 [동아리방의 물품]**

1. 동아리방의 모든 물품은 공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소중히 다루도록 한다.

2. 동아리방 내 캐비닛의 사용 기간은 약 1학기이며, 파트별로 사용한다.

3. 동아리방 내 선반은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반드시 깨끗이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며 사용하도록 한다.

4. 물품 대여는 회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실명을 거론하여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개인물품의 비치]**

1. 동아리방에 개인 물품을 비치할 경우, 이름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름이 없을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물품의 주인이 책임진다.

**제32조 [악기 관리]**

동아리 소유의 악기에 관한 모든 권한은 회장이 갖는다.

**제33조 [비밀번호]**

1. 비밀번호의 설정

가. 비밀번호는 임원진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2. 비밀번호의 변경

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시기는 임원진이 결정한다.

나. 임원진의 판단 하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3. 비밀번호의 공개

가. 비밀번호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여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예외 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의 판단에 따른다.

**제2조** **[개정일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5월 23일 개정되어 개정 즉시 효력을 갖는다.

본 회칙은 2024년 3월 29일 개정되어 개정 즉시 효력을 갖는다.